

## 09 자동차세(舊주행세<sup>5</sup>) 포함

자동차의 소유와 주행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교통 혼잡 유발 및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후불제적 세금

###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1.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2. 납세의무자 :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 소유자 사망시에는 민법상 상속자분이 가장 높은 자 또는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 부여

#### 3. 과표 및 세율

##### ①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일반 승용자동차(배기량)				기타승용차(전기차 등)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1,000cc이하	cc당 18원	1,000cc이하	cc당 80원	2만원	10만원
1,600cc이하	cc당 18원	1,600cc이하	cc당 140원		
2,000cc이하	cc당 19원		cc당 200원		
2,500cc이하	cc당 19원	1,600cc초과	cc당 200원		
2,500cc초과	cc당 24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감감

5) 구(舊) 자동차세 및 주행세는 2011.1.1. 법률 제10221호(2010.3.31. 전부 개정)로 지방세 목이 통·폐합되기 전의 세목이며 현재의 자동차세(소유분 및 주행분)를 말함

②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 (승합차) 자동차 종류별 영업용 2.5~10만원, 비영업용 6.5~11.5만원
- (화물차) 적재용량별 영업용 6,600~45,000원, 비영업용 28,500~157,500원
- (특수자동차) 영업용(소형 13,500원, 대형 36,000원), 비영업용(소형 58,500원, 대형 157,500원)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 18,000원

**4. 부과·징수방법**

-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본세액)을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6월1일과 12월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
  - \* 年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잔여기간의 자동차세 10%의 범위에서 세액 공제 (2021년부터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적용 세액 공제)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주행세)

**1. 개요**

-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00년 도입)

**2. 납세의무자**

-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 정유회사(5개사: SK, GS, 한화, 에스오일, 현대) 및 유류수입자



### 3. 과세표준 및 세율

-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
- ※ 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할 경우 그 세율의 3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현재 시행령에 따라 26%의 조정세율을 적용함

### 4. 부과·징수방법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징수의무자)는 다음달 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세의 징수세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